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5월 30일
나. 발 의 자: 차인영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차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관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구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제5조)
❍ 위원회 설치, 활용분야, 이용의 활성화, 데이터책임관(안 제6조 ~ 제9조)
❍ 데이터의 수집·관리, 민간데이터의 구매(안 제10조 ~ 제11조)
❍ 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데이터의 제공(안 제12조 ~ 제13조)
❍ 데이터플랫폼, 실태 자체 점검, 평가 및 보상(안 제14조 ~ 제16조)

❍ 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행규칙(안 제17조 ~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4차 산업혁명으로 분야 간 경계 완화·융합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초연결 시대가 가속화되며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현실임.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 데이터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정책 사례로는 △ 버스 정류장 현황, 승하차, 생활이동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한 출퇴근 맞춤버스 도입 지원, △ 범죄 신고, 유동 인구 및 조도 데이터를 활용한 순찰 우선순위 추천 및 치안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 △ 대기질 통계, 버스 이용 현황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우선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음. 본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 구(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에 대한 구민의 이용권 보장을 제고하고자 제정됨.

❍ 주요 내용으로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데이터심의위원회, 데이터 책임관, 데이터 플랫폼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에 각각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두고 있어 해당 규정을 조례에 재규정한 사안이며,
- 안 제6조에서는 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지능정보화 자문위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데이터책임관을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지정하고 주관 부서를 보좌관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경우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에서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이 없음.

-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에 따르면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생성·관리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 요청 권한, 데이터 품질진단 평가에 대해 개선 요구 권한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생성·취득·관리 중인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활용을 위해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데이터플랫폼 구축 근거와 더불어 실태 자체 점검, 평가, 표창, 우수사례 발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우리 구 행정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 활용 될 수 있는 환경 수립에 관련한 내용들을 담음.

❍ 검토 결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3.7.30. 제정되었고 그 이후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6.9. 제정됨.
- 또한 우리 구(區)에서는 이를 근거로 여의도 봄꽃 축제 빅데이터(유동인구, 축제매출, 쓰레기 배출 등)를 분석하여 차기 봄꽃 축제 관리를 위해 활용한 바 있으며 올해도 관내 안양천 방문자 이용 현황 분석(수도권 생활이동 인구, 도로명 주소 공간정보 등)을 통해 수변 문화 활성화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각 법률에 의거하여 업무를 추진 중이긴 하나, 상호연계·보완적인 두 법률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담아 우리 구(區)의 종합적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의미를 가짐.
-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 데이터 기반행정, 빅데이터

분석 등 전담 조직을 두고 있으나 우리 구(區)에서는 아직 전담 조직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의 관련 사업 추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5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차인영、이규선、김지연 우경란、정선희(5인)

1. 제안이유

관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구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활용분야, 이용의 활성화, 데이터책임관(안 제6조 ~ 제9조)

마. 데이터의 수집·관리, 민간데이터의 구매(안 제10조 ~ 제11조)

바. 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데이터의 제공(안 제12조 ~ 제13조)

사. 데이터플랫폼, 실태 자체 점검, 평가 및 보상(안 제14조 ~ 제16조)

아. 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행규칙(안 제17조 ~ 제1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대한 구민의 이용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4.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산업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민간데이터”란 「데이터산업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지능정보화 자문위원이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활용분야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안전사고, 재난,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

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6. 지역의 고용 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7.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② 구와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계획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등)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데이터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지원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책임관은 구의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을 보좌관으로 두고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데이터의 구매)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데이터를 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구매일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구매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데이터를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데이터플랫폼) ① 구청장은 데이터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와 공공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한다.

제15조(실태 자체 점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 자체 점검을 하는 경우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실적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